NO. B 056522

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

◎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 34조의 주·정차위반으로 같은 법 제156조, 제160조, 제161조에 따라 **과태료가 부과**되며,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**견인대상 차량**입니다.

◎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의견진술기간 내에 중구청 주차관리과로 **직접 방문하시거나 서면(FAX, 우편, 인터넷)으로 의견을 진술**하실 수 있으며 **의견진술기간 내 자진납부 시에는 20% 감경**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 의견진술 후 자진납부 기간이 경과하면 20% 감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과태료 · 견인료 및 의견 진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뒷면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처 : 중구청 주차관리과(의견진술 FAX : 02-3396-8869, (우) 04558 중구 창경궁로 17)
☎ 단속문의 : 02-3396-6252, 6299 ☎ 납부문의 : 02-3396-6270(6272~6277)

※ 인터넷주소 : http://traffic.junggu.seoul.kr (단속일로부터 2~3일 후 단속 및 의견진술 조회 가능)

※ http://etax.seoul.go.kr(서울시 세금납부서비스), www.wetax.go.kr(행정자치부 세금납부서비스) ARS 1599-3900(서울시 세금납부 자동전화)

※ 운전자가 차를 떠나면 즉시 단속대상이 되며, 사전예고는 실시하지 않습니다.

※ 견인 차량 보관소 : 서울 중구 손기정로 101(만리동 2가 6-1), 전화 : 02-2280-8374

※ 어린이 보호구역, 노인 ·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주차위반 단속 시 과태료 (승용 8만원, 승합 등 9만원)가 부과됩니다.

차량소유자 고지사항	위반사항 (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)
[redacted] 차량번호: 70라5733 위반장소: 세종대로 20길 15주변 위반일시: 2018-11-21 10:22 위반내용: 주정차금지(황색실선)구역 단 속 자: 김현수, 정우영 비 고: 민원불편신고 예고 · 정보 없음 ※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등 안내(뒷면참조)	1. 교차로 · 횡단보도 · 보도(인도) · 건널목 2.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 3.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이내 4. 버스정류소의 기둥, 판, 선으로부터 10m이내 5.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6. 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 7.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 주차 8. 소방용기계 · 가구, 소방용방화물통,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 · 흡수관으로부터 5m이내 주차 9.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주차 10. 주 · 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상의 주 · 정차 (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주 ·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) 11.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도록 주차 12. 주차의 방법과 시간 등의 제한사항 위반의 주차
	단속문의 ☎ 02-3396-6252, 6299
단속부서 중구청 주차관리과	납부문의 ☎ 02-3396-6270, (6272~6277)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

차량소유자등 귀하

NO. B 056521

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

◎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 34조의 주·정차위반으로 같은 법 제156조, 제160조, 제161조에 따라 **과태료가 부과**되며,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**견인대상 차량**입니다.

◎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의견진술기간 내에 중구청 주차관리과로 **직접 방문하시거나 서면(FAX, 우편, 인터넷)으로 의견을 진술**하실 수 있으며 **의견진술기간 내 자진납부 시에는 20% 감경**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 의견진술 후 자진납부 기간이 경과하면 20% 감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과태료 · 견인료 및 의견 진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뒷면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처 : 중구청 주차관리과(의견진술 FAX : 02-3396-8869, (우) 04558 중구 창경궁로 17)
☎ 단속문의 : 02-3396-6252, 6299 ☎ 납부문의 : 02-3396-6270(6272~6277)

※ 인터넷주소 : http://traffic.junggu.seoul.kr (단속일로부터 2~3일 후 단속 및 의견진술 조회 가능)

※ http://etax.seoul.go.kr(서울시 세금납부서비스), www.wetax.go.kr(행정자치부 세금납부서비스) ARS 1599-3900(서울시 세금납부 자동전화)

※ 운전자가 차를 떠나면 즉시 단속대상이 되며, 사전예고는 실시하지 않습니다.

※ 견인 차량 보관소 : 서울 중구 손기정로 101(만리동 2가 6-1), 전화 : 02-2280-8374

※ 어린이 보호구역, 노인 ·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주차위반 단속 시 과태료 (승용 8만원, 승합 등 9만원)가 부과됩니다.

차량소유자 고지사항	위반사항 (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)
[redacted] 차량번호: 72우1807 위반장소: 세종대로 20길 15주변 위반일시: 2018-11-21 10:21 위반내용: 주정차금지(황색실선)구역 단 속 자: 김현수, 성우영 비 고: 민원불편신고	차로 · 횡단보도 · 보도(인도) · 건널목 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이내 스정류소의 기둥, 판, 선으로부터 10m이내 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널 안 및 다리 위 주차 내경보기로부터 3m이내 주차 방용기계 · 가구, 소방용방화물통, 소화전 또는 소화용 화물통의 흡수구 · 흡수관으로부터 5m이내 주차 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부터 5m이내의 주차 · 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상의 주 · 정차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주 ·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) 른 교통에 장애가 되도록 주차 차의 방법과 시간 등의 제한사항 위반의 주차
예	
※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등 안내(뒷면참조)	단속문의 ☎ 02-3396-6252, 6299
단속부서 중구청 주차관리과	납부문의 ☎ 02-3396-6270, (6272~6277)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

차량소유자등 귀하